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927(昭和 2)년 8월 3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78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30호(號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궤간(軌間)을 달리하는 철도(鐵道) 또는 항로(航路)와 연락(連絡)하여 화물(貨物)의 운송(運送)을 한 경우에 연락지점(連絡地點)에서 접속비(接續費) 중(中) 1927(昭和 2)년 10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31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「차급화물(車扱貨物)」을 「차급화물(車扱貨物: 급외품[級外品] 제2종[種] 위험품[危險品]을 제[除]함)」로 개정(改正)하고, 동(同) 항(項)의 다음에 아래[左]의 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차급화물(車扱貨物) 중(中) 급외품(級外品) 제2종(種) 위험품(危險品) 동(同) 40전(錢)